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출자 및 출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출자 및 출연 이름과 그 금액을 표기하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 원,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88억1천863만 원을 출자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717만 미합중국달러, 세계은행의 금융혁신기금 및 녹색성장기금 등에 9천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및 e-Asia 지식협력기금에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및 287억3천만 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기후행동특별기금등에 470만 미합중국달러,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등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등 총 7개 기구의 23개 기금에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 원을 출자 및

출연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45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출연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1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2천300만 미합중국달러
1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5천300만 미합중국달러
1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1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12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출연	5억 원

별표 4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5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에 출연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4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287억3천만원

별표 6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33억8천137만1천544원
22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출자	88억1천862만8천456원

별표 10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5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5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과견프로그램에 출연	120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12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33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35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기금에 출연	5억원

별표 14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투자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16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11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 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 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 ~ 43. (생략) <신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② 제2조제5항에 국제부흥개발은 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 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1. ~ 119. (생략)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출자금 또 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 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 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 ~ 43. (현행과 같음) 44.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 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45.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 감축기금에 출연: 1천117만 미합중 국달러 1. ~ 11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1. ~ 17. (생략)

1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1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2천300만 미합중국달러

1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출연: 5천300만 미합중국달러

1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1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12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개발기금에 출연: 5억원

1.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1. ~ 38. (생략)

<신 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 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1. ~ 20. (생략)

<신 설>

18. 국제금융공사의 녹색회복혁신 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 ~38. (현행과 같음)

3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에 출연: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4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 기금에 출연: 287억3천만원

1. ~20. (현행과 같음)

21.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33억8천137만1천544원

22.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 빈곤국가지원기금에 출자: 88억1천862만8천456원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
흥개
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
입대

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1. ~ 49. (생략)

<신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
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
상

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1. ~ 30. (생략)

<신설>

1. ~49. (현행과 같음)

5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
협력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
달러

5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후행동특
별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5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
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
연: 120만 미합중국달러

1. ~30. (현행과 같음)

31.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
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
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
입대상

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
액은

별표 16과 같다.

1. ~ 5. (생략)

<신설>

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33.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
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
러

34. 미주개발은행의 중남미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기금에 출연:
5억원

1. ~4. (현행과 같음)

5. 다자투자기금에 출연: 100만 미
합중국달러

1. ~5. (현행과 같음)

6.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

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 에 출연: 11만3천519 미합중국 달러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